

방송국의 무선종사자의 자격·정원배치기준(제117조제1항제4호 관련)

구 분	자 격 별 정 원			
	무선설비기사 또는 방송통신 기사	무선설비산업기사 또는 방송통신산업 기사	무선설비기능사 또는 방송통신기능사	계
안테나공급전력 1.5킬로와트 이상	1명	1명	1명	3명
안테나공급전력 1.5킬로와트 미만 500와트 이상		1명	2명	3명
안테나공급전력 10와트 초과 500와트 미만			2명	2명
안테나공급전력 10와트 이하			1명	1명
연 주 소			2명	2명

비 고

1. 중계만을 목적으로 하는 무인방송국 및 원격제어 등의 자동화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송신소·중계소의 경우에는 무선종사자의 자격별 정원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2. 공동체라디오방송국의 무선종사자 자격별 정원은 연주소마다 1명으로 한다. 다만, 연주소와 송신소 간 원격제어 등의 자동화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주소를 위한 무선종사자가 송신소를 위한 무선종사자를 겸임할 수 있다.